

[서식 예] 즉시항고장(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)

즉 시 항 고 장

사 건 2000카기000 소송이송

항고인(피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항고인은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 손해배상(자)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이 같은 법원 20○○카기○○○호로 제기한 소송이송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원이 20○○. ○. ○.자로 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.

원 결 정 의 표 시

주문 : 피고의 이 사건에 대한 이송신청을 기각한다. (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: 20○○. ○. ○.)

항 고 취 지

- 1. 원 결정을 취소한다.
- 2. 이 사건을 ◎◎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.

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항 고 이 유

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 인바,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지도 ◎◎시이고, 피고의 주소지도 ◎◎시이므 로 ◎◎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, 또한 ◎◎지방법원에서 재판 하는 것이 소송의 지연·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이송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송달료납부서 1통.

2000. 0. 0.

위 항고인(피고) 🔷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항소부 귀중



제 출 법 원	원심법원	제출기간	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
			로부터 1주 이내
제출부수	항고장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39조, 제
			445조
	・재항고(민사소송법 제442조)		
불복절차	·즉시항고의 각하·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		
및 기간	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재항고하여야 함		
	(민사소송법 제444조)		
비 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	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 타	·이송결정에 대한 항고시에는 상대방 수 만큼에 해당하는 항		
	고장부본 제출		
	·지방법원 합의부의 이송신청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		
	항고의 경우에는 OO 고등법원 귀중 으로 표기함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법원 >> 관할